

보도시점 (전매체) 11.18.(화) 국무회의 종료시점
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」 개정을 통해 ‘가짜 장애인기업’ 제재 강화

- 장애인 기업 확인 취소 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

중소벤처기업부(장관 한성숙, 이하 중기부)는 18일(화)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‘가짜 장애인기업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.

거짓·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* 확인이 취소된 경우,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**하는 내용을 담은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(이하 장애인기업법) 시행령」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(화)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.

*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(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% 이상)

** '25.5월 개정된 「장애인기업법」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,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 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

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,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.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.

개정안은 11월 28일(금)부터 시행되며,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, 요건을 갖춘 ‘진짜 장애인기업’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.

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“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”라며, “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정책과	책임자	과 장	윤석배 (044-204-7820)
		담당자	사무관	손임배 (044-204-7825)

참고1

장애인기업 확인 제도 현황

□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

- (법적근거)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8조의2
- (주요내용)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 혜택, 장애인기업 지원사업 참여 등을 위한 장애인기업 확인서 발급
 - * (전체 장애인기업 수) 174,344개('23년 기준), (확인서 발급 기업 수) 9,150개('24년 기준)
- (발급절차) 공공구매종합정보망(SMPP) 신청서 접수 → (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) 현장실사 → (지방중소벤처기업청) 승인 및 발급

참고2

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」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3(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) ①·② (생략) ③ 법 제18조의2제3항*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을 말한다. <신설> <신설>	제11조의3(장애인기업 확인의 유효기간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----- ----- 1. 법 제18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2에 해당하여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: 취소된 날부터 3년 2.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하여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경우 (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: 장애인 또는 장애인기업 명의를 대여 받은 자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날부터 3년

* 「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」 제18조의2제3항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, 명의대여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나, 명의대여로 법상 지원을 받게 한 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'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' 내에는 장애인기업 확인 신청 불가(개정 '25.5.27.)